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

RRA KSDB 제10호 (2018.12.27.)

□ 개 요

○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발행 주체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을 공유

□ 근 거

○ 「전파법」 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○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8조(적합등록의 신청 등), 제10조(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)

□ 내 용

○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「전파법」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“공급자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등록”하는 제도임

○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는 자체시험성적서,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,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 등으로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할 수 있음